제778회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행정안전부)	1.보험의 종류 등(신설)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가입시기, 보상한도	1.비중요
2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행정안전부)	1.행정사 업무신고 기준 추가 및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기준 신설(강화) 기존 신고기준 외에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하였을 것"을 추가 반영(안 제20조제1항) ※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에도 동일하게 적용(안 제23조의5 신설) 2.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 범위(신설) 행정기관의 범위를「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가목의 기관으로 하고,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함 3.행정사 연수교육 대상자 및 시기 등 규정 (강화) 업무신고를 한 행정사는 업무신고 이후 매 2년마다 16시간 연수교육을 받도록 함 4. 행정사법인 설립 절차 규정 - 설립인가 신청(제23조의2), 정관 기재사항(제23조의3), 설립등기 절차(제23조의4)(신설)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5.비중요 6.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정관 기재사항, 설립등기 절차 명시 5.행정사법인 손해배상책임 보장방법(신설)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하여 보험 가입 또는 공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 1인당 1천만원 또는 행정사법인 당 1억원 이상 보상 설정토록 함 6.대한행정사회 총회 보고 의무(신설) 대한행정사회 총회 개최시에는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3	행정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행정안전부)	1.법률 개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기준 개정(신설) 법률 개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기준 개정 2.민원처리 기간 현행화(강화)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처리기간(15일)	1.비중요 2.비중요
4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금융위원회)	1.결제대행업체 및 하위 정기결제 사업자에 대해 공정한 거래조건 준수 및 고지(신설) 결제대행업체는 정기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위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회원의 거래 조건(거래내용, 금액, 대금결제일, 유료전환, 계약 해제·해지 조건 및 환불조건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요구하고, 이러한 거래조건을 약관 및 계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위	1.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가맹점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 및 결제대행계약 정지 및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5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1.부가통신업자 임원 선임 또는 해임시 보고절차 구체화(신설)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선해임 보고시 보고해야 할 구체적 내용을 규정함 2.경제적 이익의 세부내용 규정(신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1의3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용카드업자의 법인회원 등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1.비중요 2.비중요
6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	1.방화에 지장이 없는 창호설치 대상 건축물(신설) 현행 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 마감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에 대해서도 방화에 지장이 없게 설치되도록 함	1.비중요
7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요건 추가(강화)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이 가능한 요건에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를 추가(제58조제1항제3호를 제15조제1항제7호로 이관) ○ 정보통신서비스 특례(제6장) 삭제에 따라 제18조제2항 후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그 적용을 받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같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5.비중요 6.중요 7.비중요 8.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은항 제3호에 따라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제공할 수 있음 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신설) ㅇ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개인영상정보 촬영 기준 마련(제1항, 제2항) ㅇ 촬영사실 표시 및 공지의무 부과(제3항, 제4항) ㅇ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시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및 운영·관리 방침 마련 등 준용(제5항) 3.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적용(강화) ㅇ 수탁자로 위탁자와 마찬가지로 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적용(준용) 4.가명정보 파기 의무 적용(강화) ㅇ 가명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가명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할 의무 부과 5.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신설) ㅇ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준수 여부, 이해하기 쉽	9.비중요 10.중요 11.비중요 12.비중요 13.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도록 알리려고 노력한 정도 등을 평가하고, 필요시 개선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6.개인정보 전송 요구 준수 의무(신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받을 권리(개인정보 수령권)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제3자 전송요구권) 도입 7.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및 업무 규정(신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 권리 행사와 개인정보의 통합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을 관리·감독할 수 있음 8.자동화 의사결정 배제 등 요구 준수 의무(신설) ○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만 의존하여 특정 정보주체에 법적 효력 또는 생명·신체·정신·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거부권, 이의제기권, 설명요구권 도입 ○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동화 의사결정의 절차와 영향을 정보주체가 사전에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한 배제, 재처리, 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법적 의무 부과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9.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 및 중지명령(신설) ㅇ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이전 할 수 있는 요건 다양화 - 정보주체의 동의 외 법률·조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등으로 다양화 ㅇ 국외이전이 계속되고 있거나 추가적인 국외이전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보호수준이 취약한 국가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 국외이전 중지명령 제도 도입 10.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강화(강화) ㅇ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응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제43조제3항) ㅇ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45조2항 및 제3항) ㅇ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제47조제3항) 11.개인정보취급자의 사적 목적 이용 금지(강화) ㅇ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추가 12.개인정보 침해 시정명령 강화(강화) ○ 시정조치 명령의 요건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개선 13.공표사유 추가 및 공표명령(강화) ○ 처분결과의 공표대상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하고, 공표대상자에 대해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함	
8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 (해양수산부)	1.명령의 이행완료 보고(신설) 해역관리청 등으로부터 오염물질의 수거·정화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 완료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명령권자에게 보고해야 함	1.비중요
9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환경부)	1.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지정기준(신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등 기준 마련 2.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지정취소 기준 등(신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의 지정취소 등 세부기준 마련	1.비중요 2.비중요
10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1.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신설) 법률에서 위임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변	1.비중요 2.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환경부)	경허가 대상 행위, 허가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구체화함 2.공공폐자원관리시설 반입수수료 등(신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반입수수료 결정 방법(환경부장관 승인, 반입수수료 금액 공개) 등을 구체화함	